

負祿商과 自治法

徐庚林*

目次

- I. 序
- II. 負祿商의 團體的 性格
- III. 負祿商과 自治法
 - 1. 負祿商의 理念
 - 2. 負祿商의 運營機構
 - 3. 契制度和 團員의 權利義務
 - 4. 엄격한 規律로서의 杖門法
- IV. 結語

I. 序

負祿商 또는 祿負商은 조선시대에 鄕市, 즉 지방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행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경제적 교환을 매개하던 전문적인 시장상인이다. 이들은 대개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을 돌면서 각 지방의 물품교환을 촉진하였다.¹⁾

상설 점포가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는 行商이 상품유통의 주된 담당자였다. 장시가 없던 초기에는 행상이 촌락을 돌아다니며 賣買를 하였고, 장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店幕에서 잠을 자며, 장날에 맞추어 장시를 순회하면서 장사를 하였다.

行商은 어물, 소금, 미역, 水鐵, 土器, 木物 등과 같이 무게나 부피가 크고 값이 비교적 헐한 상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 負商, 즉 등짐장사와 의류, 장신구, 종이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가볍고 비교적 값이 비싼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

*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정승곤, 「시장의 사회사」, 1992, 118면.

행에 걸머지고 다니는 襍商, 즉 붓짐장수로 나뉜다.

행상은 부유한 상인에 의해 조직되기도 했었지만, 영세한 행상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단체를 이루어 행상활동을 조직적으로 영위하였다.

영세한 행상들로 이루어진 負襍商회는 19세기 전반부터 史料에 등장한다. 그 조직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개의 군현을 관할범위로 하여, 관할지역의 각 장시에 있는 任所마다 本房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맡기고, 이 本房들 중에서 接長을 선출하여 商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상단을 대표하게 하였다.

負襍商회는 대내적으로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에 상호 부조하고, 商道義, 단원간의 예의와 신의성실 등에 관한 엄격한 규율을 실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官의 공인을 얻어, 관리의 수탈과 土豪나 客主의 횡포에 대응하였다. 더우기 행상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특정 물종에 대한 獨占權을 획득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負商회는 어물, 소금, 수철, 목물, 토기라는 五種 물종의 독점권을 추구하는데 진력하였다.

장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농민간의 교역과 行商의 상업활동이 고문서에 오르는 일은 드물다. 행상으로서 상업장부를 남긴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행상들은 거의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세한 행상 단체인 부보상단에서 풍부한 자료를 남겨 보존해 온 사실이 주목된다. 상업이 천시되던 시대에 영세한 행상단체가 자료를 보존해왔다는 것은 조직의 강고성, 조직에 대한 官의 공인, 그에 수반된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기인했을 것이다.²⁾

일찍이 負襍商 단체를 연구한 朴元善教授는 그의 논문 서문에서 “일반적인 商人길드(merchant guild)라면 중세기의 과도적인 현상에 불과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負襍商도 商人길드에 속하지만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그 「歷史가 특히 장구하고, 그 規模가 참으로 방대하고, 그 組織이 실로 공고하고, 그 정신이 실로 비할 수 없이 숭고하여서, 찬란한 전통과 혁혁한 業績으로 인하여 국가에 공헌하는 바 지대함에 있어서 진실로 商法史上 類例를 찾을 수 없는 世界獨步의 存在」로 보고 있다.³⁾

원래 우리 나라는 土農工商이라 하여 商人階級은 가장 천대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自衛와 相互扶助의 정신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뭉친 이 負襍商에 대하여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단체는 어떠한 理念으로 뭉쳤기에 일반적인 商人길드와도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떠한 규율 내지 法을 통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 法은 우리 나라의 私法上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996. 473면.

3) 朴元善, 「負襍商」, 1965

II. 負祿商의 團體的 性格

행상은 경제상태가 유지한 단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物化流通機能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固有의 行商인 負祿商의 활동은 古朝鮮時代로까지 거슬러 갈 수 있으나 商團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朝鮮時代였다.

負祿商團은 행상도중에 외부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성립되었다는 점, 단결력이 강한 相互扶助의 단체라는 점, 그리고 團員말고는 行商活動을 억제하여 이것이 당시의 朝廷과 社會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商人길드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⁴⁾

길드의 공통적인 성격을 상업활동에 관한 特權의 획득과 그 유지를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로 보고, 그들 고유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견고한 組織體라고 파악한다면 負祿商은 분명 商人길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負祿商은 서구나 중국의 상인길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서구의 商人길드는 상관습과 상거래수단을 기반으로 商權保障과 자본축적의 목적을 띤 利益集團의 성격이 농후하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행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도시의 實權을 장악하여 지배계층을 형성한다.⁵⁾

中國에서는 定住的 商人길드로서 특정지역의 상업독점화를 목적으로 화폐와 도량형의 통제를 주도하고, 通貨制度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負祿商은 그 목적이 특권유지와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利益團體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대중에 충성하는 철저한 이념을 바탕으로 친목과 상호부조의 측면이 두드러진 共同體였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無條件·無報酬의 봉사활동도 동시에 전개한 봉사단체로서의 성격도 농후하여, 상업자본축적의 기능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負祿商이 서구적 상인길드의 성격과는 다른 특유한 공동체적 조직을 형성·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契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團體를 통한 自治的 기능과 殖利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契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사회제도요 조직 형태이다.契에 비견할 제도나 조직이 다른 문명권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契처럼 전근대 사회 구조 속에 포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은 없었다.⁶⁾ 따라서契는 負祿商의 특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조직형태인 것이다.

4) W. J. Ashley, An Introduction to English Economic History and Theory, 2nd ed., 1892. pp.70~71 ; 朴元善, 전제서, 44면에서 再引用.

5) M. Weber, Wirtschaftsgeschichte : Abriß der universalen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1929 ; 조기준 역, 사회경제사, 1977., 256~260면.

6) 金三守, 「韓國社會經濟史研究」, 1974, 178~211면

契는 血緣的 團體와 地緣的 團體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보통 利益集團이 추구하는 殖利機能까지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負祿商은 이익집단적 성격을 강조함이 없이 한국 특유의 공동집단적 성격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였다.⁷⁾ 여기서 殖利活動은 契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고, 契活動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다.

負祿商의 이런 共同體的 특성은 開港이후, 특히 商街이 商務社로 개편됨으로써 자본추구단체로서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자본의 도전에 대응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항후 외국자본의 침투, 특히 淸商과 日商의 경제적 활동이 심화되면서부터 負祿商은 민족적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본축적의 기능을 표면화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길드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기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負祿商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5백여년동안 전국적 조직으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여 활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負祿商 특유의 理念構造와 運營機構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負祿商街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商人團體이면서도 內部組織을 통한 行動規制가 血緣共同體的 성격과 精神共同體的 성격을 분명히 表出시킨 한국 특유의 商人길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Ⅲ. 負祿商과 自治法

상업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부보상은 초기단계의 형태인 行商으로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組織으로서의 출발은 契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契는 한국인이 호흡한 생활의 요람이며, 古代社會에서 성립된 유기적 조직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貫流하는 한 동맥이었기 때문이다. 契는 우리 나라의 團體概念에서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契는 '契會' 또는 '會'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사람들의 組合' 이란 뜻이다.

契는 團體이며, 契의 規約은 團體法으로서 이것을 國法에 대비하여 自治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法概念의 問題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法概念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보다는 정의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적절한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다.

7) 黃善民, 「負祿商의 經營活動研究」, 1989, 16면.

8) 黃善民, 상계서, 20면.

법개념에 대한 종래의 법철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수많은 定義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대 사회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法을 정의하고 있다.⁹⁾

여기에서는 일정한 제도(예컨대 법원)와 전문직업인(예컨대 판사나 검사)이 중심이 된다. 막스베버는 일정한 강제 장치, 즉 일정한 규범의 집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정되어 있는 간부들의 존재를 법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法에 관한 制度的 定義는 동시에 그 公的(public) 성격을 속성으로 하여 法은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하여 法人類學者 포스피실은 지적하는 것처럼 權威(authority)의 要素를 法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법의 存在를 긍정할 수 있다. 權威와 權威構造는 국가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

法人類學者 포스피실(Leopold Pospisil)은 法의 定義와 屬性을 法律的인 權威者(判事, 族長, 法廷, 長老會議등)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들로부터 추출된, 制度化된 社會統制의 原理이며, 장래의 모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적용 의도를 가진, 當事者 쌍방이 權利-義務關係로 맺어져 있는 物理的 또는 非物理的인 성질의 制裁가 가해지는 원리로 파악하고 있다.¹¹⁾ 그래서 法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서 權威, 普通的 적용의 의도, 權利義務의 관계, 制裁의 4가지를 들고 있다.

契組織은 平等互惠의 契約情神으로 맺어져 있다. 포스피실이 들고 있는 法의 屬性에 따라 契의 法的 性格을 살펴보면, 첫째 規約 내지 “節目”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強制할 수 있는 權威者 내지 集團이 있었다. 둘째 이 權威者가 내린 法的 결정은 미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셋째 契組織은 철저한 契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義務를 다한 契員은 자기의 權利를 보장받는다. 넷째 制裁는 벌금 등 금전적인 것이 中心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조차 안 지켜 질 경우에는 契組織에서의 추방이나 소외를 시키는 것 등 심리적인 制裁가 가해진다. 이것은 物理的 制裁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契를 法으로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 負裸商의 理念

負裸商들이 독자적인 自治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닌 독특한 정신과 理念이 있었기 때문이다. 團體를 효율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의 社會的 存在 理由를 명시하고 그 활동을 방향짓게 하는 일련의 信條를 지니고 있어야

9) 梁建, 「法社會學」, 1996, 120면.

10) 梁建, 상계서, 21면.

11) Leopold Pospisil, Anthropology of Law : A Comparative Theory, New York, 1971, P. 95.

한다. 이것을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¹²⁾

負祿商은 어느 조직보다도 강력한 理念構造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身分社會에서 최하층이었던 존재였으나, 忠義·信義·禮義·情誼精神을 근간으로 한 對國家·對顧客·對社會·對內的 理念이 명확히 표출되고 있었다.

① 對國家理念으로서의 忠義

負祿商은 小我的 名利를 초월하여 國家에 진중보국하는 忠義로 결합된 團體이다.

判下商理局 節目(1885년)에 의하면, 「忠孝는 人道의 紀綱이다. 우리 商民은 치우치게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어찌 忠義에 소홀할 수 있으랴. 나라를 위해서는 끓는 물에 들어가고 불속에 뛰어들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기간내에 도착하여, 나라 은혜의 萬分の 일이라도 보답토록 도모한다(忠孝乃是人道之紀綱 而況我商民之偏被洪恩者乎如有爲國之事 雖赴湯蹈火 一令齊到期間萬一之報是矣)」고 하여 行商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은덕임을 강조하고 있다.

負祿商은 四民 중에서도 가장 곤궁한 者들로서 行商을 위해 돌아다니며 東食西寄하여 질병에 걸려도 치료의 길이 없고, 죽어도 시체를 거둘 길이 없었으나, 忠義 두 글자를 符標로 하여 有事時에는 盡忠하고 無事時에는 義理를 좇았다(本以浮萍之踪蟻風之節 靡室無家東食西寄 病無治療之道 死無掩戶之路 或至於轉輟而忠義二字常作佩身之符 有事則進忠 無事則趨義 : 完文 1984).

忠義에 대한 理念은 惠商公局序에서도 「우리 동료들은 小利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忠義를 집념하면서, 어려움에 당하면 어려움에 나가고, 죽음에 당하면 죽음에 나갈 것이다. 은덕에는 마땅히 우러러 경하하고, 은혜에는 힘써 보답하여 늘 이를 생각하여 잠시라도 잊지 않은 연후에야 우리 商團이 억만년 크게 번창할 것이다. 먼저 지극한 다스림이 나타나서, 그 규모가 엄격하므로 곤궁한 가운데에도 항상 이를 생각하고, 떳떳한 人倫의 品性을 게으르지 말 것이며, 나라에 보답하고, 은혜에 보답하여, 이 생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我同僚莫意於小利 絀益主忠義 難當就難 死當就死 德當仰祝 恩當力報 念念在茲 利晷下忘 然後可謂億萬年代 先生至治 至嚴規模 顛沛之中 常念比法 戰戰兢兢 勿忘其常彝之性 報國報恩 以是終命焉 : 惠商公局序, 1883)」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러한 忠義理念은 국가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충의로 몸을 바쳐, 死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식량공급, 흥경래난의 진압, 병인양요 당시의 報國, 경복궁 중건시의 봉사 등 국가를 위한 봉사는 중단이 없었다.

12) 黃善民, 전계서, 28면

② 對顧客理念으로서의 信義

負祿商은 일종의 商人길드임에도 불구하고 利益社會의 요소보다는 信義를 생명으로 결합된 共同社會의 성격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負祿商의 本業은 行商으로서 有無相通을 구체화하는 조직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商民은 四民 중의 一民으로서 지구가 광활하고 產物이 다르므로, 有無가 相通하지 않으면 四民이 각자의 직업에 따라 생활할 수가 없다. 이에 交易者는 天理와 人情에 비추어 진실로 떳떳한 것이므로 옛부터 聖王의 제도와 정치가 이를 教化시키게 되었으며, 우리 常民들은 前後代에 걸쳐 義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험한 곳을 밟는다(夫商者四民之一也 地球廣博物產各異 不以有無相通 民無以資生 交易者實天理人情之常 故 自昔聖王之制政亦教化於此 而我列聖朝 慈惠之政 矜盡曲遂 故 惟我商民之前後 爲國事效忠奮義一心 赴蹈者良以是也)」라고 判下商理局 節目(1885년)에도 밝히고 있다.

負祿商의 顧客은 社會大衆이며, 이들 顧客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은 信義로서 表出되고 있다. 즉 信義는 人間的 行動의 기본이 되므로 負祿商의 信義는 對顧客側面에서 商道義 遵守와 직결된다. 行商活動을 전개할 때, 商道遵守를 기본원칙으로 설정한 負祿商團으로서의 顧客과의 去來에 대해 信義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明示는 「商民은 生業이 東西에 산재하고 있으나 오로지 信義로서 法道를 세워야 한다(蓋其生業散在東西 其法專立信義 ; 判下商理局節目, 1885)」고 하고 있다.

또 鬪悍을 좋아하고, 고객에게 몸가짐이 공손하지 못하고 強賣 등 억지행동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벌을 주어 물리쳐야 한다(同僚中 如有好雜技 如鬪悍 持身不恭 行仰於場市店幕之間者 當罰黜類事 ; 漢城府完文, 1879)는 信條에서 과악되듯이 행상활동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한 몸가짐의 규정뿐만 아니라 強壓的 販賣 등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③ 對社會理念으로서의 禮義

負祿商의 社會에 대한 理念은 조선시대의 社會규범인 禮義로 집약할 수 있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勿亾言·勿悖行·勿浮亂 등으로 그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負祿商들은 동서남북 사방의 민중들에게 禮義로 환대하면 天道가 올바르게 순환되고, 聖人의 가르침이 다시 밝아져서 아랫사람들이 이를 본받게 된다는 信條를 지니고 있었다(能令東西南北之人 歡若同胞則矢引是天道循環 聖教復明 下効之功至於此 行商而極矣 ; 行商廳節目, 1870).

이와 같은 對社會理念은 먼저 勿亾言이 禮義의 기본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전국 八道를 행상하는 도중에 불손한 言語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불친절하여 예의에 벗어나는 태도는 자체적인 規律로 다스려서, 혹시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하였다(或有物件賣

買時 言語不恭者及無故是非者 先告任中處決, 無論老少 雖逢某處 相對敬謹 無或寒錯事 : 行商廳節目, 1870). 이들이 사용한 言語는 예의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특이하였으며, 團員 상호간에는 동무(同務)라고 호칭하였다.

다음으로는 勿悖行의 禮義를 들 수 있다. 負祿商들은 어그러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생활화하였고, 만일 단원중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짐벌하는 일이 있으면, 團員의 기본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철저히 조사한 후 제명처분하도록 하였다(若有悖富蔑貧 悖強凌弱者 ——廉探 嚴考拔去同僚事 : 行商廳節目, 1870).

또 上任을 모욕하거나 행동이 공손하지 못한 단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負祿商들이 대체로 불우한 사회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사회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행동면에서 禮義가 부족되기 쉬운 점을 경계한 것이었다. 특히 負商들은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대체로 집도 없었고 妻子도 없이 길나그네로 거의 한평생을 생활하게 되어, 마음을 부질 곳이 없었으므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¹³⁾

그러므로 負祿商들은 그들의 탈선행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雜技·飲酒·毆投 등의 행위를 엄금하였으며, 浮言妄行하고 品行이 부정하여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① 市上街路 有相關作梗之 弊是去等 諸所任 這這自斷處理是遺 若爲拒逆則期於告官懲理事 : 商賈稷立議, 1853. ② 同僚中如有好雜技好闊悍 持身不忝 行仰於場市店幕之間者 當罰黜類事 : 漢城府完文, 1879).

다음으로는 勿淫亂의 禮義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사람이 가장 삼가야 할 것은 男女의 분별이므로 負祿商들은 親疎를 불문하고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義理로서 모셔야 하고 男女間의 일은 백배로 조심하되, 혹시라도 잡스러운 방탕한 남자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團員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自治法으로 다스리거나 官家에 알리어 조치할 것을 유념시키고 있었다(人之最慎者 男女之別也 行商所接處 無論親疎 皆待以嫂叔之誼比 他事百倍操心 無或殺雜 嚴加戒飭 若有 蕩子雜類 奸犯於其間者 則非徒自僚中 痛加嚴治斷 當聞官刑配矣 男加惕念事 : 行商廳節目, 1870).

흔히 祿商은 有室有家한 경우가 많았으나, 負商은 無室無家한 경우가 많았다. 혹시 장가든 負商이더라도 妻子를 帶同하게 되는데, 이 때 숙소인 道房에는 內外負商이 낯설은 負商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同宿하였다. 낯설은 負商과 함께 대나무가리개를 드리워 막아 잠을 잤으나, 그럼에도 삼엄한 定規를 준수하여 조금도 문란하지 아니 하였다.¹⁴⁾ 그것은 負祿商들이 단원의 부인을 형수처럼 예우하였으므로 倫氣가 정숙하게 엄수되었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驗標의 뒷면에는 勿淫亂이라는 標語가 기재되어, 이를 어디서든 실천하고 있었다.

13) 黃善民, 전계서, 28면.

14) 柳子厚, 「朝鮮祿負商攷」, 1948. 33~34면 : 黃善民, 전계서, 35면에서 재인용.

④ 對內的 理念으로서의 情誼

負祿商團은 忠義라는 理念만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결의 實相은 兄弟之誼에 있었다.¹⁵⁾ 따라서 부보상問의 內的 理念은 情誼라고 할 수 있고, 患難相救·疾病相門·死亡相助·慶會相參 등으로 구체화된다(患難相救 疾病相門 死亡相助 慶會相參 以爲敦風厚誼事 : 漢城府完文, 1879).

負祿商들은 대체로 그 處地가 사회적으로 불우하였으므로, 相愛相恤하고 同病相憐하여, 血肉之間보다도 더 두터운 兄弟之誼의 情分을 바탕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相扶相助하였다. 이들의 法道는 四寸之誼를 함께 맺었고, 살아서는 서로 의탁하고, 병이 들었으면 구하여 살리며, 죽으면 염습하여 장사지내 줌으로 四海之內 皆兄弟였다(俱結四寸之誼 而生則依托 病則求活 死則歛座 比所謂 四海之內皆兄弟是也 齒高呼兄 齒下謂弟之義非耶 : 負商廳改設序, 1881).

이와 같이 結義兄弟와 父子之間과 같은 情誼로서 결합하였으며, 生死를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서 동료의 불행에는 정성을 다 바쳐 도와주고, 慶事에는 나의 일처럼 기뻐하였다. 또한 負祿商들은 患難相救의 대표적인 경우를 病救死葬에서 찾았고, 團員의 病과 死를 가장 큰 불행으로 보고 극진한 정성으로 서로 도왔다(爲上愛黨病救 死葬之 四法 猗然成規矣 : 完文, 1894) 요컨대 부보상은 서로 뜻을 합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情誼의 이념으로 단결된 團體였다.

2. 負祿商의 運營機構

負祿商은 각 지역에서 個別組織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전국조직으로 體系化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도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었다. 따라서 負祿商의 運營機構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1800년대 후반기의 淸山八區地域 負祿商團의 운영을 기준으로 살피고자 한다.¹⁶⁾

負祿商의 전국적 通括은 官의 中央組織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나, 地域商團은 개별적으로 자유로이 활동하였다. 각 地域商團의 任員들로 구성된 任員會는 地域商團의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總會의 기능을 지닌 公事는 意思機關으로 작용하였다.

① 公事

公事는 所屬任所·任房別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任員을 선출하고, 重要 審議案件을

15) 朴元善, 전계서, 79면.

16) 黃善民, 전계서, 38~44면

토의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總會라고 할 수 있다.

公事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任員選舉로서 任員 중의 대표적인 接長을 비롯하여 班首, 領位등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審議案件을 토의할 때에는 發言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平團員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亭山八區에서는 부여·정산·홍산·임천을 一區로 하고 다른 네곳을 또 하나의 區로 하여, 격년제로 후보자를 넘으로써 任員陣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였다.

투표방법은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명단을 회람시키고, 후보자의 이름 밑에 동근 점을 찍는 圈點法을 사용하였다.

투표 다음 날은 新任 接長이 취임하고, 事務引繼가 이루어진다. 이 날은 一新하는 날이어서, 먼저 公文櫃·印櫃·長尺·物尾杖을 床위에 올려놓고 公文祭를 지낸다. 이祭가 끝나면 전 團員이 拜禮를 하고, 이어서 新舊 任員들이 업무인계를 하는 傳掌式이 끝나 잔치가 베풀어 진다.

이와 같이 2H동안 개최되는 公事の 儀式은 유교의 倫理規範을 따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선거방식과 토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② 任員會

負襍商들이 소속되어 있는 地域商團은 대체로 기혼자조직과 미혼자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亭山八區地域 負襍商도 전자를 僚中으로, 후자를 童蒙廳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었다. 소속 任所別로 선출된 襍商의 임원회는 接長을 비롯하여 領位·班首·本房·閑山都公員 등으로 구성된다.

接長은 外部的으로 商團을 대표하고, 內部的으로 실무를 직접 담당한다. 처음에는 都接長에 의한 任命制였으나, 후기에 와서 選舉制로 되었다. 임기는 1年, 總會召集과 商務를 관장하였다.

領位는 亭産地區를 망라하는 顧問으로서 班首·接長 등의 모든 首役을 역임한 人士 중에서 추대된다. 領位도 公事에서 選定되고, 처음에는 終身制였으나 후에는 3年制로 되었다.

班首는 各邑을 대표하는 고문으로서 각 邑단위로 선임된 자를 八邑 전체 公事에서 선거하되, 八邑을 兩分하여 해마다 교대하여 선정하였다.

그 외에 接長에 의해 임명되어 각 所管任所의 事務를 관장하는 副任, 本房, 閑山都公員등이 있었다.

한편 미혼자로 구성된 童蒙廳은 僚中の 지시를 받으며, 長維의 序를 엄수하고 있었으나 公事時에는 童蒙들의 정당한 건의는 존중되었다. 특히 負商은 경제적 이유로 총각으로 늙어, 오랫동안 童蒙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③ 任員들의 責任

各地 사방으로 행상하고 있는 무수한 團員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接長을 중심으로 하는 任員들에게 중대한 責任과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任員들은 먼저 平團員을 赤子와 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公員執事護之如赤子 : 完文, 1884).

各道の 接長 등은 소임중 籍勢를 부리거나 마을에서 행패하거나 商民을 토색질한다는 폐단을 듣게되면, 즉각 이를 조사하여 당해 任員들은 물론 그 감독의 責任을 맡은 두목들까지도 엄중한 단속을 받게 함으로써(各道接長與所任中 或有籍勢行悖於村閭是去乃 討索商民之弊 有所人聞 則該道頭目 與該任所接長 別般嚴處事 : 判下商理局節目, 1885) 平團員들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요컨대 任員들은 權限濫用과 任務해태에 대한 무거운 責任을 지고 있다.

그 외에도 公金犯用이나 驗標濫發에 대한 責任도 진다.

任員과 平團員들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情誼를 바탕으로 일방적 수직체계가 아닌 상호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선임된 任員들은 단원들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단원들은 接長과 班首를 어버이처럼 존경함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

3. 契制度와 團員의 權利義務

부보상단은 대개 官의 공인을 얻은 공식적인 조직이 되면서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되기 이전에 이미 내부의 規律과 規約을 갖추고 있었다.

부보상이 나름대로 團體를 조직하게 된 것은 각지를 행상하면서 조우하게 되는 도둑의 피해나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行商은 그 성격상 행적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이 불안정했으므로 상부상조하는 일종의 契의 형태를 띤 規約을 가짐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契는 平等을 至上原理로 삼고, 개인의 이기적인 利益追求나 개인적 사정을 엄하게 제약하는 契約觀念에 바탕을 둔 조직이다. 상부상조를 목표로 契員의 權利義務關係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契가 잘 지켜지는 이유는 契員이 회비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면 이에 상응하여 권리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지도력에 의해 契가 좌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權利를 주장할 수 없는 自治의 원리가 이 속에 숨어있다고 할 것이다.

부보상은 조선 후기에 와서 정기적인 장시의 발달과 정치권력과의 밀착된 관계 등으로 인해 그 세력이 더욱 확대된다. 조선말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末業인 상업에 부보상들이 많이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말까지 지방 장

시의 실질적인 商人集團으로서 계속 활동영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부보상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및 지방단위로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에게 부여한 엄격한 權利와 義務를 그들 스스로가 잘 지켜온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團員의 義務

① 信義誠實의 義務

負祿商의 團員關係는 한마디로 信義로 결합된 단체이다. 단원 사이에 信義에 어그러지면 곧 위법을 의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信義誠實은 현대에 있어서도 온갖 행위의 기본원칙이 된다. 부보상들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信義에 어그러질 때에는 商道義의 위반으로 된다.

漢城府完文節目에 의하면, 단원이 먼저, 상거래시에는 利를 貪함에 급급하여, 상도의를 망각하고, 타인을 속이거나, 물건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단연 除名處分하도록 하고 있다(如有爭利忘誼 欺人害物稱頌於都會之地. 思避於急難之中者 常用罰黜類事).

더 나아가서 타인을 속이지 않는다는 부작위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어 商業에 실패하여 밑천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자금융통을 해 줄 의무가 있다(失利見敗 財貨不贖者 則自同儕中相借貸 以給貨本事).

둘째, 信義觀念이 남녀간에는 貞操義務로 나타난다. 행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보상들의 숙소였던 道房에서 남녀가 함께 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보상 중에는 처자를 데리고 다니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런 때 풍기상의 문란을 막기 위해 여자 祿商들을 형수나 제수와 같이 대접하되,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처단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信義觀念은 對人關係에 있어서는 타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禮儀遵守義務로 나타난다.

漢城府完文節目에도 上任 즉 諸接長을 모욕하거나 말이 공손하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或有凌慢上任 語言不遜者 即地用罰事).

넷째로 信義는 團體關係에 있어서는 規律嚴守義務로 나타난다. 行商廳節目에 의하면, 단원들 중에 法을 무시하고 節目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同僚中 或有蔑法悖戾. 不遵節目. 會議揭罰事 : 行商廳節目, 1870).

② 患難相救의 義務

信義誠實의 義務가 信義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다는 기본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면, 患難相救의 義務는 적극적으로 信義가 요청하는 善行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信義를 기초로 한 고도의 道德性을 의미한다. 즉 타인과 고락을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로서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종교적 명제에까지 도달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團員의 義務로 삼는다는 것은 부보상의 정신이 고도의 德性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漢城府完文節目을 보면, 路上에서 병자를 보면, 며칠씩 묵어 가면서라도 약을 써서 구하여 주고, 市店에서 객사한 자가 있거든 발견한 단원의 소속 任所에서 초상을 치른 다음, 고향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經費納入 義務

商社의 운영을 위하여 會費, 信標代錢, 罰錢 및 別收入 등의 재원을 가지고 있었다.

會費는 자기가 소속한 임소에 봄 가을로 내는 것으로, 봄에 내는 春收錢은 임방 단원이 병이 났을 때 썼고, 가을에는 秋補錢이라 하여 단원이 사망시에 그 장례비로 썼다. 이 회비는 단원 모두에게 균일하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이상의 會費 기타수입 이외에 부보상은 契의 제도를 활용하여, 相互扶助와 殖利를 통한 行商資本을 축적할 수 있었다.

祿商廳契節目에 있는 契制度의 要綱은 대략 다음과 같다.

「今此設契而鳩財求殖而贖用者」

「今明兩年殖利後折用事」

「各拾伍兩錢入契事」

「契錢段以五分邊殖利事」

「契錢段契員中勿爲分給事」

「有司段溫陽二員牙山四員新昌二員式差出各掌基境內事而契錢逢換分給後成冊納于契長修契日無遺捧納事」

「契日若有無故不參者則當施罰事」

「契員中若有自願出契者則不給本契錢出送事」

「契員中若有耐酒作拏至有犯罪者則大者別般施罰後不給本錢而逐出小者嚴杖懲勵事」

「契長段前案令監新差令差出事」

또는

「契員中財錢段列錄於左以此遵行事」

이라 하여, 契를 모은 趣旨는 團員의 財産을 모아서 殖利를 하여, 商業 밑천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今明 兩年을 지내서 殖利가 된 後에야 비로소 풀어 쓰게 마련이다. 契에 들 때에는 누구든지 15兩式 낸다. 契錢은 5分邊으로 定한다. 그리고 契錢에 대하여는 契員끼리는 나누어 쓰지 못한다. 契事務를 擔當하는 有司는 同節目에 定하는 바에 따라서 各 區域마다 一定한 數로 選定하여 各各 그 境內의 事務를 맡아 보게 하고, 帳簿를 꾸며서 契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契日에는 틀림없이 捧納하여서 契에 支障이 없도록 主意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契日에 오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處罰

한다. 만일 稷員中에 稷에서 나오고자 願하는 者가 있거든 本稷錢은 내어주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稷의 持續에 支障이 없게 하기 위하여 稷員中에 술주정하여 犯罪하는 者에 대하여는 甚한 者는 處罰後에 本錢을 빼앗고 내어 쫓을 것이요, 甚하지 아니한 者라도 곤장을 때려서 징계한다.¹⁷⁾

負祿商은 契制度를 활용함으로써 相互扶助를 실천할 수 있었고 이 契는 또한 殖利를 통하여 行商資本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契員中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에 대한 扶助金 支給은 親喪·부모장례·수연·妻喪·과거합격의 경사·자녀의 혼사·손자녀의 혼사 등에 대하여 세분화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契를 통한 殖利를 함에 있어서 殖利前에 哀慶患難이 있으면 각자 추렴으로 하며, 일정한 기간의 殖利 후에 축적된 자본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는 協力組織으로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직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분화된 계층간에서는 두가지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즉 士大夫階層에서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기반으로 한 鄉約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을 향유하여, 他階層과 구분된 행동을 전개했음에 비하여, 農工商民은 자기방위와 보전을 위하여 契를 조직하였고, 이 契를 통하여 相扶相助와 協同精神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負祿商이 전개한 行商活動과 이를 통한 對民衆 生活水準의 配達은 이들이 합리적으로 조직한 契制度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團員의 權利

內負의 權利 중에 가장 큰 것은 商權, 즉 行商에 관한 特權인 專賣權이 부여된 것이다. 商權이 이들에게 부여된 것은 부보상의 국가에 대한 奉公의 충성을 가상하게 보고, 또 상업의 진흥이 곧 국가진흥의 物的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부보상들이 特定商品에 대한 專賣權이 부여된 것은 李太朝때에 公認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후 戰役이 있을 때마다 부보상들은 운반·정찰·통신 등의 軍務에 많은 공을 세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신임은 두터워졌고, 專賣權은 強化 되었다.

조선시대 말엽 정계가 혼란하고, 민심이 각박함에 따라서 양민들의 최소한의 人權조차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다. 부보상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여기에 驗標制度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驗標란 부보상들의 身分証으로서, 그 소지자에 한해 商品專賣權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경시되기 쉬운 人權도 보장되는 特典을 받게 된다. 漢城府完文節目에 의하면, 탐관오리 기타 不意之變으로 인하여 人權侵害가 되지

17) 朴元善, 전계서, 163-164면.

않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完文 등의 公文 또는 驗票制度에 의해 生活의 安全을 기하고 있다.

단원중에 죄없이 捕吏들에게 체포되어 억울하게 人權이 침해당할 경우에는 그 설욕을 위해 단연코 集會를 열어, 천부의 人權을 보장할 것으로 되어 있다.

설욕하기 위하여 集會를 열어 집단적으로 자력구제를 구하는 「都會」가 인정되었다.18) 따라서 부보상단에서는 제한된 범위지만 단원의 중지를 모으는 集會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4. 엄격한 規律로서의 杖門法

負祿商은 그 단결력의 공고함에 비례하여 紀綱도 지극히 엄격하여 國法の 制裁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負祿商內은 自治的으로 조직되어 自治制度가 이루어 졌으므로 國法보다 內法이라고 할 수 있는 自治法の 規律下에 특수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內員 중에서 法度を 어기고 능멸하는 행위를 하거나 節目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會議에 부쳐, 처벌하여 단체의 紀綱을 바로 잡았다. 심지어는 不爲問喪者, 宴會不參者, 賻儀錢不納者, 公會時의 雜談者에게 까지도 笞杖 10~15대의 体罰을 주는 등 엄격한 規律을 유지하고 있었다.

負祿商內은 父子兄弟와 같은 情誼로 결합되어 마땅히 同心合力하게 될지라도 추상 같은 義理의 단체이므로, 一令下에 일제히 모여 단체의 규약을 준수하였다. 法度에 어긋난 團員에게는 단호히 論罰함으로써 확고한 기강을 수립하여 法을 따르고 義를 지키게 했다(統而論之 誼若父子兄弟 同心合力矣. 有恩則一令齊會 違法則舉以論罰 可謂有其法 而守其義 : 判下商理局節目, 1885). 조금이라도 情實에 끌리지 않았으므로 부보상단의 處事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다.

內員들이 商團의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除名處分을 비롯한 각종의 엄중한 罰則이 적용되므로 감히 法度を 어길 수 없었다. 일단 제명된 團員은 다시 負祿商으로서 행상을 할 수 없음은 물론 商內에서 遯出되어 生計의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다.

부보상단의 自治法 중에는 일찍부터 杖門法이라는 독특한 刑法이 있었다. 杖門法은 곤장을 치면서 심문하는 제도이다.

團員이 잘못하였을 경우, 그가 속한 道房에서는 당사자에게 杖門을 놓아 罪를 다스렸다. 장문이란 작대기 두 개를 마주 매어 門처럼 걸쳐놓는 것인데, 그 앞으로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었고, 그것을 건드릴 수도 없었다.

저지른 罪의 경중에 따라 다스리는 방법이 달랐다. 負商의 경우, 罪가 가벼우면 笞

18) 이 都會는 군중심리에 의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할 엄리에서 점차 금지되기에 이른다. 朴元善, 전계서, 171면.

刑으로 다스렸고, 죄가 무거우면 명석으로 말아놓고 부상들의 휴대품인 勿尾杖으로 다스렸다.

襍商의 경우에는 죄가 가벼울 때는 가지고 다니는 鑿尺이라는 자로, 죄가 중하면 명석말이로 다스렸다.

이상과 같이 杖門法은 부보상에게는 國法과 비견될 정도였으니,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장문법은 부보상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동시에 그들의 規律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부보상의 장문법은 國法에도 없는 特別法이요, 自治法이었다.

1851년에 작성된 부보상 조직의 文書인 「禮山任房立議節目」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罰을 주는 「罰目」이 나온다.

罰目

1.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 없는 자는 불기 50대를 친다.
2. 선생을 속이는 자는 불기 40대를 친다(여기서 '선생'이란 조직의 우두머리나 간부를 말한다).
3. 시장에서 물건을 억지로 판매하는 자는 불기 30대를 친다.
4. 동료에게 나쁜 짓을 한 자는 불기 30대를 친다.
5. 술주정하면서 난동을 부린 자는 불기 20대를 친다.
6. 불의를 저지른 자는 불기 30대를 친다.
7. 언어가 공손하지 못한 자는 불기 30대를 친다.
8.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을 능멸한 자는 불기 25대를 친다.
9.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기 25대를 치고, 벌금 3전을 물린다.
10. 놀음 등 잡기를 한 자는 불기 30대를 치고, 벌금 한 냥을 물린다.
11. 문상(問喪)하지 않는 자는 불기 15대를 치고, 벌금 5전을 물린다.
12.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불기 10대를 치고, 벌금 한 냥을 물린다.
13. 부고(訃告)를 받고도 가보지 않은 자는 불기 10대를 치고, 벌금으로 부조로 낼 돈의 배를 물린다.
14. 모임에서 빈정대며 웃거나 잡담하는 자는 불기 15대를 친다.

1884년에 작성된 문서인 「聘儀節目」도 위의 罰目과 같으나 벌이 다소 강화 되어 있다.

負襍商의 任員들은 엄격한 規律을 유지함으로써 所屬行商을 통솔할 수 있는 自治權을 부여받고 있었다. 다만 下部에서 처결하기 어려운 일은 上部로 稟議決定 하지만, 諸般事를 地域商團內部的 自治에 위임하였다(八道接長有事於同僚中 不可任斷者 則階稟于都接長以決事, 或有凌慢上任言語不遜者 即地用罰事 : 漢城府完文, 1879). 따라서 위법자가 있으면 즉시 自治的 處罰權을 발동하여 엄정하게 이를 시행하였다. 또 團員

중에서 人權이 침해된 경우에는 本府에까지 提訴하지 말고 당해 任房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IV. 結 語

負祿商은 士農工商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自衛와 相互扶助의 정신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조 5백년을 굳건하게 지탱하여 온 단체였다.

한국에서의 上農工商 意識은 서열개념이 아니라 四民主義思想에서 발효된 分業的 生業概念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과 노비를 제외한 모든 백성을 뜻하는 대명사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의 完文에서 되풀이되어 강조되고 있다.

完文이란 조선시대에 官公署에서 발급하는 官公文書를 말하는데, 부보상단은 원래 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각종의 完文書類가 많다. 또 각종의 規約을 조목조목 규정한 여러 가지 節目書類가 풍부하여 부보상단의 조직과 활동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文書, 즉 이른 바 公文은 주로 接長이 公文櫃에 보관한다. 이와 함께 印櫃를 다른 器物과 함께 보자기에 싸서 높은 곳에 마련된 祭床위에 신성하게 모셔 놓는다.

이것들은 外人이 절대로 손을 댈 수 없고 보관자 자신도 每朔望(초하루·보름)의 祭祀 때에만 흰 장갑을 끼고서, 이 祭床을 내려놓아 제사를 지낼 뿐이다. 마치 神主를 모시듯 敬畏를 나타내고 있다. 新舊任員들의 교체시의 公文祭도 같은 모습이다. 完文이나 節目등의 公文을 상위에 올려 놓고 신주 모시듯 경외를 표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투철한 遵法精神을 읽을 수 있다. 준법정신은 그들에게는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忠義·信義·禮義·情誼를 理念으로 한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준법정신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모자랄 정도이다. 이러한 理念을 제도화한 것이 우리 한국 고유의 契였다. 부보상은 契制度를 활용하여 단체를 즐기차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契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組合契約 내지 組合 유사의 無名契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부보상의 契制度는 그 강고함, 엄격성, 그리고 준법정신에서 오늘날의 조합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전통적인 法을 거론할 때, 흔히 現代法과의 단절을 논의하면서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보상의 준법정신이야말로 오늘날에도 본받을 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規約을 신앙처럼 받들게 하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自治法인 規約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생계와 자긍심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